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7일, 이양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9.)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양수 의원)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와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는 상황임.

이에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 쇼핑 센터 등 수익시설이 어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어항을 어업 기반 시설 외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계적인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1. 입법 배경 및 총괄 검토

가. 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 최근 우리 어촌은 전체 어가 인구가 2019년 11만 3,900명에서 2023년

8만 7,100명으로 감소하고, 연령별 어가인구 역시 60대 이상이 65.2%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¹⁾.

- 어촌의 고령화율(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48%로 전국(18.2%) 대비 2.5배이고 어가인구의 감소율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7.5%로 같은 기간 농가인구 감소율(△9.9%)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어가 및 어가인구(2019년~2023년)]

(단위: 천 가구, 천 명, %, %p)

구 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어 가	50.9	43.1	43.3	42.5	41.8	-0.8	-1.8
어가 비율(%)*	0.3	0.2	0.2	0.2	0.2	0.0	-
어 가 인 구	113.9	97.1	93.8	90.8	87.1	-3.7	-4.1

* 자료: 통계청(2024)

[연령별 어가인구(2022~2023년)]

(단위: 천 명, %)

구 분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2	90.8 (100.0)	8.4 (9.3)	3.7 (4.0)	7.5 (8.3)	14.8 (16.3)	31.3 (34.5)	25.1 (27.7)
2023	87.1 (100.0)	7.0 (8.0)	3.3 (3.8)	6.6 (7.6)	13.4 (15.4)	30.9 (35.5)	25.8 (29.7)

* 자료: 통계청(2024)

□ 이처럼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어촌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인력의 유입이 어렵고 기존 어촌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1) 관계부처 합동,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보도자료, 2024.5.13.

이에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어항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항을 기존의 어업 기반시설에 한정된 공간이 아닌, 어업과 관광, 레저, 문화 등을 포괄하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유도, 체계적인 어항개발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개편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어항 내에서의 레저·관광행위가 확대되면서 어항 내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이 발생하여 어항 환경의 훼손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어업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어항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어항배후지역을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어항개발의 체계화를 위해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야영이나 쓰레기 투기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항을 단순한 어업기반시설이 아닌 어업과 관광, 문화, 소비 등 각종 생활과 산업이 가능한 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어항 환경의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크게 어항편익시설의 정의 확대, 어항배후지역 정의 신설,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개편,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조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어민 편의 증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의 ‘기능시설’에 어선검사장을 추가하고, ‘어항편익시설’에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② 어항시설의 기능 제고 및 어항의 부가가치 증진, 수산업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어항배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③ 기존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실시계획’으로 구분함(안 제19조, 제23조 등).

④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기능시설의 목적 외 사용, 무허가 취사·야영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45조 및 제46조의2 신설 등).

나. 총괄 검토

- 개정안은 어항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개발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어항지역을 과도한 취사·야영 및 쓰레기 투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현재 어촌 및 어항지역이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 등 어촌·어항의 전통적인 개념 및 개발체계에 변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우선 안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어항배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어항구역과 어항배후지역과의 관계, 어항배후지역의 기능과 어항배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다음으로 안 제19조는 기존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실시계획의 두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인 어항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는데, 개정안의 어항개발기본계획과 현행법 제4조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과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등 일부 법체계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항만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지정권자에게도 어항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관계 부처 의견

- 개정안과 관련된 부처 등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안 제23조의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권자의 경우 별도의 실시계획 수립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관련해 지정권자도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비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함.

2. 주요 내용 검토

가. 어항시설 추가 및 어항배후단지 정의 신설 등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어항시설의 정의 중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추가하고,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쇼핑센터를 추가하는 한편, ‘어항배후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고(안 제2조제5호 개정, 제5호의2 신설 등), 인·허가 의제조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관광단지의 지정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개정).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	5. ----- ----- ----- ----- ----- ----- ----- -----

•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생 략)

2) 안벽(岸壁) · 물양장(物揚場) · 계선부표(繫船浮標) · 계선말뚝 · 잔교(棧橋) · 부잔교(浮棧橋) · 선착장 · 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생 략)

나. 기능시설

1) · 2) (생 략)

3) 어선 건조장 · 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 · 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 · 어구 보전시설

4) ~ 11) (생 략)

다. 어항편익시설

1) · 2) (생 략)

<신 설>

3) · 4) (생 략)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횃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 7) (생 략)

라. (생 략)

-----.

가. -----

1) (현행과 같음)

2) -----소형선부두-----

3) (현행과 같음)

나. -----

1) · 2) (현행과 같음)

3) -----건조장 · 수리장 · 검사장-----

4) ~ 11) (현행과 같음)

다. -----

1) · 2) (현행과 같음)

3) 귀어업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4) · 5) (현행 3) 및 4)와 같음)

6)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쇼핑센터-----
--

7) · 8) (현행 6) 및 7)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7. ~ 10. (생략)

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7조 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5의2 “어항배후지역”이란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
-----어항개발기본계획-----

-----.

가. ~ 라. (현행과 같음)

7. ~ 10. (현행과 같음)

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

2. ~ 17. (생 략)

<신 설>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 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 17. (현행과 같음)

1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 제) ① -----

-----지정하며, 어항배후지역의 경우에는 방재(防災), 관광·레저, 수산물 유통 등 어항배후지역이 수행하는 특정 기능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② -----어항, 어항시설 및 어항배후지역-----.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어항,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또는 어항배후지역-----

-----.

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① -----
-----어항구

는 <u>어항구역</u>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u>역(어항배후지역을 포함한다)</u>-----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가) 어항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 현행법은 어항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어항시설을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및 해당 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안 제2조제5호)은 이 중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어항편익시설에 귀어업인, 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종사자의 주거 및 교육시설과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또는 쇼핑센터를 추가하고, 기능시설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부두’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어항시설 범위 비교]

현행법상 어항시설	개정안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독·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u>물양장(物揚場)</u>·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정박지·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u>물양장 → 소형선부두</u>로 변경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다음으로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추가하고, 어항편익시설에 귀어업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주거·교육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현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설 수요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어촌에 외국인어업근로자를 위한 숙소 건립 사업²⁾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어항구역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건립되거나 건립 중인 숙소는 모두 어항구역 밖의 국·공유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 한편, 개정안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쇼핑센터³⁾를 어항편익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지역 특산물 판매장, 생선횃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관광객 이용시설을 다양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레저 기반 구축 등의 목적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에 민자 유치를 위해 어촌관광구역을 설정 (17개 항)하는 등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2) 농특회계 - 어업인 삶의 질 향상(3440-312) -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 2024년 8월까지 강원도와 경북에 총 9개소의 복지회관이 건립되었고, 추가로 3개소의 복지회관이 건립될 예정임.

3) 개정안에서는 쇼핑센터의 뜻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별표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하나로 ‘쇼핑센터’를 규정하면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인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그 뜻을 정의하고 있음.

현재 민간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와 관련해서는 쇼핑센터 등 시설 건립이 기존 어항 내 상행위나 어업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지역 어업인 또는 지역상인으로부터의 의견수렴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어항배후지역의 정의 및 지정 근거 마련 등(안 제2조제5호의2, 제17조 및 제18조)

□ 개정안은 어항배후지역을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어항 배후지역의 지정 근거 및 어항배후지역에 어촌관광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항만법」은 ‘항만배후단지’의 정의⁴⁾ 및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입법례를 참고하여 어항에 대해서도 그 기능을 지원하고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항 배후지역’을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2024년 3월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어촌·도시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민의 안정적인 삶 지원을 위해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바다 생활권 개념을 도입해 어장자원, 해양공간, 어항 및 배후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어촌과 연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어항배후지역 개념도]



□ 다만,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고, 항만배후단지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정한 구역’으로 정의되는 등⁵⁾ 기존 항만구역·항만시설과 항만

5)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배후단지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어항배후지역의 경우 어항시설의 기능제고 및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항배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어항배후지역의 지정위치와 기존 어항 구역과의 관계, 어항배후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어항배후지역은 어항구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어항배후지역에 각종 기능시설(수산물 처리·가공시설 등), 어항편의시설(레저·관광·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어항구역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 인·허가 의제 대상 조항 추가(안 제8조)

- 개정안은 인·허가 의제 조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고, 「관광진흥법」 관련 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어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의제 조항을 신설 또는 현행화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 「국토계획법」

마. 항만배후단지

11.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¹⁾ 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제88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을 규정하고 있던 현행법과 달리,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⁶⁾ 및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도 의제 대상 규정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의제 대상 규정인 제56조 및 제88조의 인·허가의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제30조 및 제86조도 의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인·허가 의제를 보다 실재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국토계획법 의제 조항 관련 현행법·개정안 비교]

국토계획법 중 인·허가 의제 조항	현행법	개정안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
제36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	×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
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

□ 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의 의견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 다양한 계획을 통칭하는 것으로, 「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부분⁷⁾에 한하여 인·허가를 의제할 필요가 있고, 제36조(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해

6)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제하도록 함.

7) 도시·군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역시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구분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현행법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어항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3조 개정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어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어항개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 ----- ----- ----- ----- -----어항개발기본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	② -----어항개발기본계획----- -----어항개발기본계획-----

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5. (생략)

③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이 제 1항 단서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③ -----어항개발기본계획-----

-----.

④ (현행과 같음)

⑤ -----어항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어항개발기본계획-----

-----.

⑥ -----어항개발기본계획-----

-----.

제20조(어항개발기본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기본계획-----
-----.

1. ~ 6. (현행과 같음)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 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제21조(어항개발기본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어항개발기본계획-----

② -----어항개발기본계획-----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항개발기본계획-----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생략)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현행과 같음)

② -----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1. 2. (현행과 같음)

③ -----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지정권자가 고시한다.

⑤ -----
-----승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생략)

②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

-----.

⑥ -----어항개발기본계획-----.

⑦ -----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어항개발기본계획-----
-----.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 ④ (생략)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 가를 할 때에는 <u>어항개발계획</u> 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⑤ ----- ----- ----- <u>어항개발기본계획</u> ----- ----- -----.
⑥ ~ ⑪ (생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어항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권자가 어항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어항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달리 개정안은 기존 어항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⁸⁾하는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개편하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실시계획 수립 없이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를 하도록 하며, 비지정권자의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8) 안 제19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어항개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이는 「항만법」 등 관련 입법례에서 항만개발 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점을 참고하여, 어항의 개발 절차에도 기본계획 → 실시계획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 진행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① 새롭게 도입된 어항개발기본계획의 내용 및 다른 계획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있고, ② 다른 입법례 등과 비교해 볼 때 사업 주체별로 절차상의 관리 등에 있어서 일부 공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 우선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은 넓은 범위에서 정책 등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게 되는데, 개정안의 어항개발기본계획은 ① 기존의 어항개발계획과 명칭 및 수립주기만 다를 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사실상 동일⁹⁾하며, ② 현행 「어촌·어항법」에는 어촌·어항정책 전반을 규율하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해당 계획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함.

따라서, 계획의 내용이나 계획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계획의 성격 및 관계를 명확히 할

9) 개정안은 어항개발계획의 포함항목에 대한 현행법 제20조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 계획의 명칭만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있음.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항만법」의 경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주기와 수립주체가 다르고, 그 포함항목과 목적도 상이하여 각 계획간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여짐.

2) 다음으로, 개정안은 아래 표와 같이 비(非)지정권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와 달리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 경우 사실상 ‘어항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인데, 어항개발기본계획은 개정안에 의할 때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이므로 실제 사업 추진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 추진상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청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항만법」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관리청인지, 비관리청인지와 무관하게 모두 실시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과 현행 어촌·어항법, 개정안의 개발절차 비교]

항만법	현행 어촌·어항법	개정안
①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기본계획 수립(§5①) (해수부장관, 10년 주기) ▼ 항만 기본계획 고시(§8) ▼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9) ▼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10) ▼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10) ▼ 개발사업 착수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해수부장관, 10년 주기) ▼ 어항개발계획 수립(§19①) (지정권자, 수시로 수립·변경) ▼ 어항개발계획 고시(§19⑥) ▼ 개발사업 착수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해수부장관, 10년 주기) ▼ 어항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정권자, 10년 주기/5년 수정) ▼ 어항개발기본계획 고시 (안§19⑥) ▼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관련 규정 없음 ▼ 개발사업 착수
②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기본계획 수립(§5①) (해수부장관, 10년 주기)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9②)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9③)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0②)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10①) ▼ 개발사업 착수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해수부장관, 10년 주기) ▼ 어항개발계획 수립(§19①) (지정권자, 수시로 수립·변경) ▼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민간) 또는 협의(지자체) (§23②③) ▼ 개발사업 착수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해수부장관, 10년 주기) ▼ 어항개발기본계획 수립 (안§19①) (지정권자, 10년 주기/5년 수정) ▼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민간) 또는 협의(지자체) (안§23②③) ▼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안§23④) ▼ 개발사업 착수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에서 편집 및 수정

3) 다음으로 개정안은 비지정권자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비지정권자로 하여금 단계별로 계획을 마련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도 실시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¹⁰⁾

비지정권자의 사업계획이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절차를 두고 있는 「항만법」¹¹⁾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10) 현행법의 경우 비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별도로 어항개발사업계획을 마련해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11)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조문 생략)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가. 항만기본계획
 - 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4.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5.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 항만개발사업계획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정권자의 허가 및 확인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보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그 밖에 개별 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3조제4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¹²⁾은 지정권자의 사업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조문에는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안 제23조제4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범위를 수정 하거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지정권자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련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 계획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안 제19조의 어항개발기본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¹³⁾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

12)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계획으로서 개별 어항개발에 대해 어항구역, 개발수요 및 시기, 평면배치,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하여 정하는 일반적·포괄적 기본계획이라는 입장이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국내 전체 어항에 대한 개발 비전과 목표설정, 추진전략 등 어항정책을 포괄하는 계획으로서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 어항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지정권자도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비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어 보임.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국유지 우선 매각 규정 폐지, 어항관리청 범위 확대, 연체금 부과 및 감면 근거 마련 등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어항시설을 매각·양여함에 있어 국유지를 공공단체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이 지정해제되어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된 경우도 추가하는 한편(안 제27조제2항·제3항),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을 관리하는 어항관리청의 범위에 구청장을 추가하고 어항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전부·일부를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5조제1항·제3항),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는 자가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연체금 부과에 법적 근거 및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용·사용료 및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제5항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양여) ① (생략)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양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② ----- -----

제23조

[illegible]

1. -----
-----지방어항, 어촌정주
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
2. -----
-----국가어항, 어촌정주
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
3.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
항-----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2. (생략)

② (생략)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 ⑤ (생략)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
-----시장·군수
· 구청장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전문인력, 기술·장비
등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

③ (생략) <u><신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나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2) 검토의견

가) 공공단체에 대한 국유지 우선 매각 규정 삭제 등(안 제27조)

- 현행법 제27조는 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¹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공정한 처분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특례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14) 현재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가 규정되어 있음. (시행령 제27조)

-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이 규정에 따라 공공단체에게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일부를 우선 매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어항시설 관리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당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다음으로, 같은 조 제3항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각각 다른 형태의 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권자가 일반재산의 양여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어항의 범위에 마을공동어항을 추가하여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어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어항시설의 양여를 허용하려는 것이며, 마을공동어항에 필요한 어항시설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 마을공동어항의 어항시설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어항의 종류 및 현황]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정의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개발주체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청	광역시장, 시장·군수	광역시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지원조건	국비 100%	지방비 100% (단,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 사업은 국고보조 70% 지원)	지방비 100% (단,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 사업은 국고보조 70% 지원)	지방비 100% (단,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 사업은 국고보조 70% 지원)
항 수	115개항	289개항	632개항	2개항

자료: 해양수산부

나) 어항관리청 추가(안 제35조)

- 현행법 제35조는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관리청은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로,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어항관리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구청장도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관리청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구청장에게도 국가어항 등의 관리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어항이 소재한 기초 지자체의 업무여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어항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지역 특색에 맞는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현재 광역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도지사가 어항 관리청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어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토록 하고,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어항관리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 연체금 부과 및 감면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42조)

□ 현행법 제42조는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연체료 징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았음. 또한, 현행법은 국가, 지자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의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 이에 개정안은 사용료·점용료의 납부를 연체한 자에 대한 연체금 부과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나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연체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천재지변 등 발생 시 사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복구 등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라.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명확화, 출입통제 조치, 부칙 등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기자재 창고 등의 기능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활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어항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취사·야영, 물놀이,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45조 개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구역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안 제46조의2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62조제4항 개정).

다음으로 부칙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금지 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금지 행위) ----- ----- ----- ----- -----.

1. ~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8. (생략)

<신설>

1. ~ 7. (현행과 같음)

8. 기자재 창고 등 제2조제5호나
목에 따른 기능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9. 허가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10.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취사·
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46조의2(출입통제) ① 어항관리청
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
를 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
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
을 받는 장소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
하는 장소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
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
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

제60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제6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9호까지 또는 제11호-----

5. ~ 7.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5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받지 아니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4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 검토의견

가) 금지행위, 출입통제 근거 마련 등(안 제45조, 제60조 및 제62조)

- ☐ 최근 바닷가에서의 캠핑이나 레저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어항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취사·야영, 물놀이나 상행위 등 어항의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방파제의 테트라포드 등 위험지역에 낚시,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접근하였다가 추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항에서의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무역항, 연안항, 어항 등의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92건(38명 사망)이며¹⁵⁾, 그 밖에 전국 방파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462건,

15)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현황(방파제 안전사고 중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만 반영)

구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06
발생(건)	292	49	37	41	42	32	39	35	17
사망(명)	38	5	3	6	2	5	7	6	4

그 중 어항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296건(전체의 64%)임.

- 어항의 경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에 비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생선횃집이나 해수욕장 등 대중 이용 시설과 인접한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광객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어항구역 내에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어항구역 내에서 레저 등의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제한 없이 취사·야영하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어항 환경 및 이용 질서를 훼손하고 어항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 구역에서 기사재 창고 등의 기능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허가 없이 취사·야영을 하거나 물놀이,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항구역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방파제 등 장소에 대해 어항관리청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어항의 기능 및 질서의 보전,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과 어항

이용객 사이의 갈등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필요한 입법으로 보여짐.

[개정안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

구 분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어항 기능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 거나(안 제45조제8호),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수산동식물 포 획·채취한 자(안 제45조제9호)로서 원상 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안 제46조의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없는 취사·야영, 물놀이,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안 제45 조제10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참고로, 「항만법」(제28조)은 항만의 보전이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유해물질이나 동물의 사체, 다량의 토석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지정장소 외의 상행위, 지정 장소 외의
취사·야영행위 및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출입통제 관련 관련 입법례]

구분	관련 법	관련 조항	조치사항
항만 시설	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등) :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에 대하여 출입통제 할 수 있음 *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 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제113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공원 구역	자연 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 :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입 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 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음	출입통제구역에 출입한 자에게는 제86조(과태료)에 따라 50만원 이 하의 과태료 부과
연안 지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가능 * 해안가 또는 방파제, 갯벌, 섬, 갯바위, 연안절벽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연 안지역에 대해 출입통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제 25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부과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나) 부칙

□ 개정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음.

개정안의 경우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두려는

부칙의 규정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 따라 각 어항별로 다수의 어항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거나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외에 어항 관련 지자체 조례 (60건)에 대한 개정 소요가 있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에 따른 준비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시행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어항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을 고려할 때 적용례를 두어 단계적으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⁶⁾.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16) 그 밖에 어항시설 점용·사용료 연체금의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안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점용·사용료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소위원장 조경태)

어항배후지역의 지정 위치 및 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수정의 결함.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어항배후지역의 지정위치와 기존 어항구역과의 관계, 어항배후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국토계획법」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만 포함되도록 하며, 어항개발계획 개편과 관련하여 현행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현행과 같이 수정하고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항개발사업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어항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형벌규정의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는 등 벌칙규정을 정비함.

수정주요내용

가. 어항배후지역은 어항의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지정하도록 어항배후지역의 지정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5호의2).

나. 「국토계획법」 인·허가 의제 관련, 「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만 해당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도 추가하도록 수정함(안 제8조).

다.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어항 개발기본계획을 현행과 같이 하기 위하여 어항개발계획으로 수정하고,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비지정권자의 경우 사업 시행허가 및 협의를 마친 경우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38조 등).

라. 비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사업시행허가는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23조, 제25조의2).

마. 안 제45조제9호(허가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및 제10호(허가를 받지 않은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에서의 기본 요건인 어항관리청의 ‘허가’는 현행법 제38조(어항 시설의 사용허가 등)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므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45조).

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벌규정에서는 삭제하되, 어항구역에서의 기능 및 질서유지를 위해 과태료(200만원 이하)

규정을 신설함(안 제60조, 제62조).

사. 각 어항별로 다수의 어항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거나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으로 부칙을 수정함(안 부칙).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다목3) “수산업종사자”를 “수산업 종사자”로 한다.

안 제5호의2 중 ““어항배후지역”이란”을 ““어항배후지역”이란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에 인접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 기준 등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 · 고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로 한다.

안 제7조제4항 중 “어항개발기본계획”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어항개발계획”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호 중 “결정(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만 해당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안 제19조의 제목·제1항 본문·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및 제6항 본문 중 “어항개발기본계획”을 각각 “어항개발계획”으로 한다.

안 제20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항개발기본계획”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어항개발계획”으로 한다.

안 제21조의 제목 중 “어항개발기본계획수립”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어항개발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어항개발기본계획”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어항개발계획”으로 한다.

안 제22조 중 “어항개발기본계획”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어항개발계획”으로 한다.

안 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되 현행 제4항대로 하기 위하여 “승인을”을 “허가를”로 하고,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되 현행 제5항대로 하기 위하여 “어항개발기본계획”을 “어항개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되 현행 제6항대로 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을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업

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협의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안 제24조제5항 중 “어항개발기본계획”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어항개발계획”으로 한다.

안 제25조의2제2항 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변경의 고시”를 “변경의 공고”로 한다.

안 제35조제3항제3호 중 “전문인력”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으로 한다.

안 제38조제5항 중 “어항개발기본계획”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어항개발계획”으로 한다.

안 제45조제9호 중 “허가받지 아니한 구역”을 “어항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한”을 “어항구역 내에서”로 한다.

안 제60조제2항제4호 중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안 제6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5조제1항제10호”를 “제45조제10호”로 하고,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받지 아니한”을 “어항구역 내에서”로 한다.

4. 제45조제9호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는 자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5의2, 제17조제1항·제2항·제7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42조제5항, 제45조제8호·제9호·제10호, 제46조의2, 제60조제2항제4호, 제62조제2항제4호, 제62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5항, 제23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독·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생략) 나. 기능시설	-----. 가. 기본시설 1) (현행과 같음) 2) -----<u>소형선부두</u>----- ----- ----- ----- ----- ----- ----- ----- ----- 3) (현행과 같음) 나. 기능시설	-----. 가. 기본시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나. 기능시설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 과 같음)
3) 어선 <u>건조 장·수리장</u> , 어 구 건조장, 어 구 제작장·수리 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 어구 보전시설	3) 어선 <u>건조장 · 수리장 · 검 사장</u> , 어구 건 조장, 어구 제 작장·수리장, 선양시설, 야적 장, 기자재 창 고 등 어선·어 구 보전시설	3) (개정안과 같음)
4) ~ 11) (생 략)	4) ~ 11) (현 행과 같음)	4) ~ 11) (개 정안과 같음)
다. 어항편익시설	다. -----	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 과 같음)
<신설>	3) <u>귀어업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종사 자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u>	3) ----- ----- - 수산업 종사 자----- -----
3)·4) (생 략)	4)·5) (현행 3) 및 4)와 같 음)	4)·5) (개정안 과 같음)
5) 지역특산품 판매장, <u>생선횃</u>	6) ----- ----- <u>휴게 음식점</u> , 일반음	6) (개정안과 같음)

<u>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u>	<u>식점, 제과점 및 쇼핑센터--</u>	
	----- -----	
<u>6)·7)</u> (생 략)	<u>7)·8)</u> (현행 6) 및 7)과 같 음)	<u>7)·8)</u> (개정안 과 같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 음)	라. (개정안과 같 음)
	<u>5의2 “어항배후지 역”이란 어항시설 의 기능을 제고하 고 어항의 부가가 치와 수산업의 활 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 따 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u>	
		<u>5의2 “어항배후지 역”이란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에 인접한 지역(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면적·기준 등에 따 라 지정권자가 지 정·고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어항 시설의 기능을 제 고하고 어항의 부 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 따 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u>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6. ~ 10. (개정안과 같음)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 제19조에 따른 <u>어항개발계획</u> 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 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 ----- ----- ----- ----- <u>어항개발기본</u> <u>계획</u>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 사업계획의 수립·변 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 용에 관하여 제7조	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 ----- ----- ----- ----- -----	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 ----- ----- ----- ----- -----

제3항에 따른 협의
를 거친 사항에 대
하여는 다음 각 호
의 허가·인가·면허·
승인·동의 또는 협
의 등을 받은 것으
로 보며, 관계 법률
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승인·동의 또
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
시·군계획시설사업
에 관한 실시계획
의 인가

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도
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ㄴ.

1. -----

-----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
목 및 마목의 계
획만 해당하고 도
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
다), 같은 법 제3
6조에 따른 도시

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
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하여 둘 이상
의 지방어항·어촌
정주어항 또는 마
을공동어항을 포함
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5. (생략)

③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

----어항개발기본

계획-----

-----,

② 어항개발기본계획

어항개발기본계획

어항개발기본계획

1. ~ 5. (현행과 같음)

③ -----

-----어항
개발기본계획-----

-----어항개발

계획-----

②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어항개발기본계획-

④ (현행과 같음)

⑤ -----어항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어항개발기본계획---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어항개발계획-----

⑥ 지정권자는 어 항개발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어 항개발기본계획---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어항개발계획 의 내용) 어항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20조(어항개발기본 계획의 내용) 어항 개발기본계획-----	제20조 (현행과 같 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 음)	1. ~ 6.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	제21조(어항개발기본 계획수립 등의 협 의) ① -----	제21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 (현행과 같음)

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
방어항에 대한 어
항개발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어항개발기본계획

② -----

어

항개 발기본 계획

② (현행과 같음)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u>어항개발계획</u>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어항개발사업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u>어항개발기본계획</u>----- ----- ----- ----- ----- ----- ----- ----- ----- ----- ----- -----. 제23조(어항개발사업	③ (개정안과 같음)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23조(어항개발사업
---	---	---

의 시행) ① 어항
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보강 공

의 시행) ① (현행
과 같음)

② -----

-----어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어항개
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의 시행) ① -----

----. 이 경우 지
정권자는 어항개
발사업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사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사를 시 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③ 지정권자가 아 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어항개발 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 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어항개발사업 계획</u> 을 수립하여 지정 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u><신 설></u>	----- ----- ----- -----. 1.2.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어항개발사업 실시</u> <u>계획</u>----- ----- -----. ④ 제1항부터 제3 <u>항까지에 따라 어</u> <u>항개발사업 실시계</u> <u>획을 수립하거나</u> <u>수립한 어항개발사</u> <u>업 실시계획을 변</u>	1.2. (개정안과 같 음)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

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업시
행자는 어항개발사
업에 착수하기 전
에 실시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실
시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려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
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지정권자는 제1
항에 따라 어항개
발사업을 시행하거
나 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어항개
발사업을 허가·협의

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 -어항개발기본계획----- -. ⑦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 ----- ----- -----	<u>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	--	--

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	
제24조(어항시설의 내 진설계 기준 등) ① ~ ④ (생 략)	제24조(어항시설의 내 진설계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제24조(어항시설의 내 진설계 기준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 음)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 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u>어항개발계획</u> 에 반영하여야 한 다.	⑤ ----- ----- ----- --- <u>어항개발기본계 획</u> -----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생 략) ② <u>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u> (수용 또는 사용하 려는 토지등의 세 목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에 한정하 다)의 수립 또는 <u>변 경의 고시</u> 가 있으 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제2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u> ----- ----- ----- ----- ----- ----- ----- -----	제2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제23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u> ----- ----- ----- ----- ----- <u>변경의 공고</u> ----- ----- -----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 항 및 제22조에 따 른 사업인정 및 사 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 음)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7조(어항시설의 매 각 · 양여) ① (생 략)	제27조(어항시설의 매 각 · 양여) ① (현행 과 같음)	제27조(어항시설의 매 각 · 양여)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 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9 조 제 1 항 에 도 불구하고 그 토지 를 <u>제23조제6항에</u> <u>따른 공공단체</u> 또 <u>는 제23조에</u>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 행하는 자에 우선 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② ----- ----- ----- ----- ----- ----- <u>제23조</u>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유재산법」 제49조	-----	
및 「공유재산 및	-----	
물품 관리법」 제3	-----	
6조에 따라 토지를	-----	
매각하는 경우에는	-----	
매수자에게 해당	-----.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		
야 할 기간을 지정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		
약을 해제하는 내		
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다	③ -----	③ -----
음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국유재	-----	-----
산법」 제55조 및	-----	-----
「공유재산 및 물	-----	-----
품 관리법」 제40	-----	-----
조제1항에도 불구	-----	-----
하고 어항시설을	-----	-----
새로운 지정권자에	-----	-----
게 양여할 수 있다.	-----.	-----.
1. 국가어항의 지정	1. -----	1. (개정안과 같음)

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u>지방어항</u> 또는 <u>어촌정주어</u> <u>항</u> 으로 지정된 경 우	----- ----- <u>지 방 어</u> <u>항</u> , <u>어촌정주어항</u> <u>또는 마을공동어</u> <u>항</u> ----- -----	
2. 지방어항의 지정 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u>국가어항</u> 또는 <u>어촌정주어</u> <u>항</u> 으로 지정된 경 우	2. ----- ----- ----- <u>국가어항</u> , <u>어촌정주어항</u> 또 <u>는 마을공동어항</u> - -----	2. (개정안과 같음)
3. <u>어촌정주어항</u> 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 어항 또는 지방어 항으로 지정된 경 우	3. <u>어촌정주어항</u> 또 <u>는 마을공동어항</u> - ----- ----- ----- ----- ----- -----	3.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 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 ----- -----.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개정 안과 같음)
1. 국가어항 및 지 방어항: 광역시	1. 국가어항 및 지 방어항: 광역시	1. (개정안과 같음)

장, 특별자치도지사, <u>시장·군수</u> 2. (생략) ② (생략)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u>해양수산부령으로</u> 정하는 자	장, 특별자치도지사, <u>시장·군수·구청장</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u>전문인력</u>, 기술·장비 등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 1.2. (개정안과 같음) 3. -----<u>해양수산부령으로</u> 정하는 <u>전문인력</u>, 기술·장비 등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	---

		----- ----- ----- -----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 음)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제38조(어항시설의 사 용허가 등) ① ~ ④ (생 략) 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 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u>어항개발계 획</u> 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 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허가 하여야 한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 용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어항개발기 본계획</u> ----- ----- ----- ----- -----.	제38조(어항시설의 사 용허가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⑥ ~ ⑪ (개정안과 같음)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 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u>자에</u> 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 료를 내야 하는 자 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 료에 대하여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 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징수한 다. 이 경우 연체금 은 사용료 또는 점 용료의 100분의 3 을 초과하지 못한 다. ③ ----- ----- -----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 금을 납부하지 아 니한 자에게는----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	---	---------------------------------------

③ (생략) <신설>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신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나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금지행위)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기자재 창고 등 제2조제5호나목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45조(금지행위) --- ----- ----- ----- ----- ----- ----- -----. 1. ~ 7. (개정안과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	---	--

	<u>에 따른 기능시 설을 본래의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활용 하는 행위</u>	
<u><신 설></u>	9. <u>허가받지 아니 한 구역에서 수 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행위</u>	9. <u>어항구역</u> ----- ----- -----
<u><신 설></u>	10. <u>어항구역 내에 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 행위 등 어항 이 용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u>	10. <u>어항구역 내에 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 행위 등 어항 이 용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u>
8. (생 략)	11. (현행 제8호와 같음)	11. (개정안과 같 음)
<u><신 설></u>	제46조의2(출입통제) ① <u>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 여 인명사고가 자 주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높은</u>	제46조의2(출입통제) (개정안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장소
에 대하여 출입통
제를 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내 방
파제, 호안, 해안
가 등 파도의 직
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그 밖에 안전사
고가 자주 발생
하는 장소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
통제를 하려는 경
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이
를 적극 알려야 한
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
통제 사유가 없어
졌거나 필요가 없

	<u>다고 인정하는 경</u> <u>우에는 즉시 출입</u> <u>통제 조치를 해제</u> <u>하고 제2항에 따른</u> <u>공고 등을 하여야</u> <u>한다.</u> <u>④ 출입통제의 공</u> <u>고 절차와 방법 등</u> <u>에 관한 사항은 해</u> <u>양수산부령으로 정</u> <u>한다.</u>	
제60조(벌칙) ① (생략)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 -----.	②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u>제8호까지</u> 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	4. ----- ----- -- <u>제9호까지</u> 또는 <u>제11호</u> ----- -----	4. ----- ----- -- <u>제8호까지</u> 또는 <u>제11호</u> -----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5. ~ 7. (개정안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생 략)	제6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 -----.	②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4. 제45조제9호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는 자
<u><신 설></u>	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통	5. (개정안 제4호와 같음)

③ (생략) <u><신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u>제</u> <u>지역을 출입</u> <u>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5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받지 아니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45조제10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 내에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	--	---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5의2, 제17조 제1항·제2항·제7항, 제27조제2항, 제35조 제1항·제3항, 제42조제5항, 제45조 제8호·제9호·제10호, 제46조의2, 제60조제2항 제4호, 제62조제2항 제4호, 제62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항·제5항, 제23조 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부터 적

		<u>용한다.</u> <u>제3조(사용료 또는</u> <u>점용료의 연체금</u> <u>징수에 관한 적용</u> <u>례) 제42조제2항·</u> <u>제3항의 개정규정</u> <u>은 이 법 시행 이</u> <u>후 납부를 고지하</u> <u>는 사용료 또는 점</u> <u>용료부터 적용한</u> <u>다.</u>
--	--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2)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부두”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건조장·수리장”을 “건조장·수리장·검사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부터 7)까지를 각각 4)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중전의 5)) 중 “생선횃집”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쇼핑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귀어업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 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5의2 “어항배후지역”이란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에 인접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기준 등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만 해당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제17조제1항 중 “지정한다”를 “지정하며, 어항배후지역의 경우에는 방재(防災), 관광·레저, 수산물 유통 등 어항배후지역이 수행하는 특정기능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항 및 어항시설”을 “어항, 어항시설 및 어항배후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어항”을 “어항 또는 어항배후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어항,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또는 어항배후지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를 “어촌관광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항구역”을 “어항구역 또는 어항배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어항개발계획을”을 “어항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어항개발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협의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제23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변경의 고시”를 “변경의 공고”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에”를 “제2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국가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촌정주어항”을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군수”를 “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기술·장비 등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자에게는”을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나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자재 창고 등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9. 어항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10. 어항구역 내에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출입통제)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중 “제8호까지”를 “제8호까지 또는 제11호”로 한다.

제62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4. 제45조제9호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는 자

5.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

④ 제45조제10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 내에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5의2, 제

17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42조제5항, 제45조제8호·제9호·제10호, 제46조의2, 제60조제2항제4호, 제62조제2항제4호, 제62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5항, 제23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5. ----- ----- ----- ----- ----- ----- ----- ----- -----.
가. 기본시설	가.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안벽(岸壁)· <u>물양장</u> (物揚場)· <u>계선부표</u> (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2) ----- <u>소형선부두</u> -----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나. 기능시설

1) · 2) (생략)

3) 어선 건조장 · 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
· 수리장, 선양시설, 야적
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 ·
어구 보전시설

4) ~ 11) (생략)

다. 어항편익시설

1) · 2) (생략)

<신설>

3) · 4) (생략)

5) 지역특산물 판매장, 생
선횃집 등 관광객 이용시
설

6) · 7) (생략)

라. (생략)

<신설>

나. -----

1) · 2) (현행과 같음)

3) -----건조장 · 수리장 ·
검사장-----

4) ~ 11) (현행과 같음)

다. -----

1) · 2) (현행과 같음)

3) 귀어업인 및 외국인근
로자 등 수산업 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4) · 5) (현행 3) 및 4)와
같음)

6) -----휴
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
점 및 쇼핑센터-----

7) · 8) (현행 6) 및 7)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5의2 “어항배후지역”이란 어항
구역 또는 어항구역에 인접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
적 · 기준 등에 따라 지정권자
가 지정 · 고시한 경우로 한정

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다)에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
하기 위하여 제17조 따라 지
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

– 101 –

	<u>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u>
2. ~ 17. (생략) <u><신설></u>	2. ~ 17. (현행과 같음) 1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 ----- ----- ----- -----

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지역·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지정하
며, 어항배후지역의 경우에는
방재(防災), 관광·레저, 수산물
유통 등 어항배후지역이 수행
하는 특정 기능 및 구역을 정
하여 지정한다.

② -----어항, 어
항시설 및 어항배후지역-----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어항 또는 어항배
후지역-----

-----.

⑦ -----어항,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또는 어항배후
지역을-----

-----.

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①

-----어

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항구역 또는 어항배후지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illegible]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신설>

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
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
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어항개발계획-----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 이 경우 지정권자
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
친 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
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u><신 설></u> 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u>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협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	--

사용) ① (생 략) ② <u>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u>(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u>변경의 고시</u>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 략)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양여)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u>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u>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3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u>----- ----- ----- -----<u>변경의 공고</u>-----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양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제23조에</u>----- ----- -----. ----- ----- ----- ----- -----
---	---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3.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④ (생략)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

③ -----

-----.

1.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

2. -----
-----국가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

3.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u>군수</u> 2. (생략) ② (생략)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u>해양수산부령으로</u> 정하는 자 ④ · ⑤ (생략)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생략) <u><신설></u>	① ----- -----. 1. ----- ----- <u>군수·구청장</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2. (현행과 같음) 3. -----<u>해양수산부령으로</u> <u>정하는 전문인력, 기술·장비</u> <u>등 어항의 유지·관리·운영</u> <u>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u> <u>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u> <u>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u> <u>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u> <u>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u>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나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금지행위) -----

-----.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8. (생 략)

<신 설>

1. ~ 7. (현행과 같음)

8. 기자재 창고 등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른 기능시설을 본래
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
거나 활용하는 행위

9. 어항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10. 어항구역 내에서 취사·야
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
위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46조의2(출입통제) ① 어항관리
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
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
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
생하는 장소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

제60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8호까지 또는 제11호-----

5. ~ 7.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6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5조제9호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는 자

5.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5조제10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 내에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4항-----

-----.